

『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세채 의원 외 6명

2. 제안이유

「주차장법」에 따라 각 부설주차장의 유형에 따른 주차장 비율을 세분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부설 주차장의 주차면수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의 비율 각 호를 신설
(안 제14조제2항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주차장법」 제19조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없음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2. 8. 26. ~ 8. 31.)결과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
-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¹⁾의 설치 비율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-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기계식 주차장 규제를 일부 완화시킴으로써 공간활용도를 높이고 차량 도난 방지 및 주차난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사고를 예방하는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나,
- 향후 기계식 주차장 완공 후 관리인 배치, 정기검사, 유지 보수 등 운영 및 관리·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1) 기계식 주차장 :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

- 노외주차장 :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
- 부설주차장 : 건축물, 골프연습장,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·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